

## 참고

### 학교발전기금 조성·접수 시 제한(금지) 사항

#### ○ 학교발전기금 조성·접수 시 제한(금지) 사항

- (1)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
  - 학년별·반별·개인별·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
- (2) 기부액의 최저·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
- (3) 사전에 모금 회망액을 조사(파악)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
- (4) 모금을 직·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
  - 발전기금 남부서나 기탁서에 지녀(학생)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남부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(알림장 등에 기록)으로 남부를 강요
- (5)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남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
- (6) 학부모에게 계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·강요하는 행위
- (7)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
  -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
- (8) 발전기금 조성 및 흥보에 학부모, 학부모단체, 교사,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
- (9) 학부모회, 어머니회,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냉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거나 일정 남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(모금)하는 행위
- (10)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·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
  - (11)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
    - 어린이신문·남편업체,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
  - (12)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

#### ○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

- (1) 리베이트(어린이 신문, 우유, 남편업체,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)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
  - \*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동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(확인하여 선별 접수)
- (2) 유지·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, 건물 등의 기부.(유지 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) 단, 관찰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
  - \*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
- (3) 각종 선거·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
- (4) 교직원복지(인건비성 경비, 교직원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 등)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
- (5)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